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매각물건명세서

사건	2024타경106593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물건번호	1	작성 일자	2026. 1. 13.	담임법관 (사법보좌관)	김태수	<u>전자서명완료</u>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최선순위 설정	2021.5.7.확정임차권			배당요구종기	2024. 8. 19.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점유자 성명	점유 부분	정보출처 구분	점유의 권원	임대차기간 (점유기간)	보증금		차임	전입신고일자· 외국인등록(체 류지변경신고) 일자·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확정일자	배당 요구여부 (배당요구일자)
김봉희	201동 905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거 임차권 자	2017.3.27.부 터	135,000,000			2017.3.27.	2021.5.7.	
<비고> 김봉희: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권자 김봉희의 승계인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11번 임차권등기(2023.6.28.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전입일 2017.3.27. 확정일자 2021.5.7.).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비고란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됨										

※1: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

2: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부동산의 표시

2024타경106593

[물건 1]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2
현대아파트
201동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4길 12-0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1층 908.76㎡

2층 939.96㎡

3층 939.96㎡

4층 939.96㎡

5층 939.96㎡

6층 939.96㎡

7층 939.96㎡

8층 939.96㎡

9층 939.96㎡

10층 939.96㎡

11층 939.96㎡

12층 939.96㎡

13층 374.785㎡

14층 569.01㎡

15층 569.01㎡

지층 159.3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9층905호

철근콘크리트조

84.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22
대 519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5,194분의 38.675

감정평가액

166,000,000

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

1회	2026.02.03	166,000,000	16,600,000
2회	2026.03.10	116,200,000	11,620,000
3회	2026.04.14	81,340,000	8,134,000
4회	2026.06.02	56,938,000	5,693,800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
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
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약서가 제
출됨
